

목조건축물 문화재의 안전을 위하여



기고 1

목조건축물
문화재의
안전을 위하여

글 ·
제진주
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1. 머리말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일부 소실(燒失)되었다. 당시 화재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모습은 통한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 생각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통분하였다. 그 후 각 종교단체, 시민단체, 문화재애호가 등 숭례문을 애도(哀悼)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문화재 화재사고는 많이 있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도 수원 화성의 서장대 화재사고(2006. 5. 1), 창경궁 문정전 화재사고(2006. 4. 26) 그리고 강원도 낙산사 화재사고가 있었다.(2005. 4. 5) 앞의 두 화재는 그 원인이 방화(放火)였고, 낙산사 화재는 산화(山火)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화재의 화재사고를 예

를 들며 외국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둥, 우리는 문화재에 관한한 비 문화국가라는 등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 문화재 담당부서를 비난하며, 숭례문 화재를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방당국을 비웃기도 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나라는 문화재관리의 후진국인가, 소방당국은 무능력하기만 한가, 외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비난과 질책만으로는 앞으로도 화재를 포함한 각종 사고로부터 문화재를 계속 지켜내어서 후손에게 영광스러웠고, 찬란했던 선조들의 기록을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없다.

우리는 현실과 역사적인 사건을 너무 잘 잊는다. 원통하고 분했던 모욕(정신대를 포함한 일본 식민지시대의

일 등),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성수대교 붕괴나, 태풍 루사와 같은 각종 재해사고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여론이 끓어올랐다가 얼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 잊고 만다. 역설적으로 잘 잊기 때문에 반만년 역사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치욕들을 잘 잊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잘 잊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잊을 수 있는 일, 잊어야만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지켜야만 할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다. 숭례문은 꼭 지켰어야만 될 문화재였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화재를 꼭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학습, 대책이 필요하기에 본 고를 정리해본다.

2. 문화재 관리 실태

가. 목조문화재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문화재의 소유는 국가가 하고 있으면서 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이 국보가 4개 소, 보물이 14개 소가 있다. 이로서 소유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문화재 관리 인력

관리인력은 입장객의 관리를 포함하여 화재 등 유사시 초동 조치할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 2〉와 같이 중

요문화재도 48개소(39%)가 관리 인력이 미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문화재 소방시설

경보설비는 건물 내 거주자가 있을 경우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없는 문화재는 미설치되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으나(다만 감지기가 관리부서나 소방서에 연동될 수 있다면 유효함), 외부 침입자나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는 CCTV는 유효한 설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도 중요문화재 123개 소 중 46개 소(37.4%)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화재 시에는 단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못질하나라도 문화재 훼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초기 소화를 기대할 수 없는 여진이다.

라. 문화재 화재 현황

’95년 이후 발생하였던 14건의 문화재 화재사고 중 방화(방화추정 포함)가 5건, 전기(합선, 누전, 추정 포함) 5건, 그리고 산불, 장작불, 원인미상 등으로서 방화가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목조문화재 현황 〈표 1〉	구분	소유주체별				관리주체별			
		계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계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국가	38	9	29	–	–	20	5	15	–
지자체	13	–	1	12	30	4	15	11	–
기타	239	13	91	135	240	13	91	136	–
계	290	22	121	147	290	22	121	147	–

문화재 관리 인력배치 현황 〈표 2〉	구분	대상	관리 인력 배치			인력 미배치
			주야 운영	주간만 운영	야간만 운영	
중요 목조 문화재	123개소	53개소	12개소	10개소	48개소	48개소
공능원 및 유적관리소	21개소	21개소	–	–	–	–
합계	144개소	74개소	12개소	10개소	48개소	48개소

주요 문화재 화재 현황 〈표 3〉	화재발생 장소	사고 일자	피해내용		원인
			피해내용	원인	
수원화성 서장대	2006. 05. 01	2층 누각 소실	–	–	방화
창경궁 문정전 화재	2006. 04. 26	문정전 문 소실	–	–	방화
강원 낙산사 화재	2005. 04. 05	동종(보물 제479호) 등 문화재와 사찰 소실	–	–	산불
구룡사 화재	2003. 09. 30	대웅전(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소실	–	–	미상

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령은 아직 미제정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소방시설을 더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소방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소방시설 등은 일반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소방관련법률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가칭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률’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지정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오류(誤謬)이다. 소방시설은 화재예방시설이 아닌 화재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경보기능과 화재진화를 위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결코 ‘예방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을 하면 화재가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입법상의 착오이며, 대부분의 국민 역시 소방시설을 화재예방시설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도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일본의 문화재 관리 현황

목조문화재는 건축자재가 화재에 쉽게 연소하는 목조 이므로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시 발생한 화재로 큰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 발생한 고베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교토지방의 유명한 절 두 채가 소실되었다.

지진이 발생한 고베지역에서 50~60km 이상 서쪽으로 떨어진 교토지역이었지만 지진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7,000여 채의 집이 연소되었다. 특히 교토지방의 경우 약 천 년 동안(794년~1869년)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일본 전체 전통 문화재의 약 20%가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수십 년 안에 교토지방의 내륙활성 단층에서 강진이 예상되어 현재 일본에서는 교토지방의 문화재에 대한 지진 및 화재에 대한 재해저감방책이 개발되고 있다. 대체로 절에 소방시설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화재에 대한 목조문화재 재해예방시스템으로 일본에서는 화재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화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마. 문화재 방재관련 법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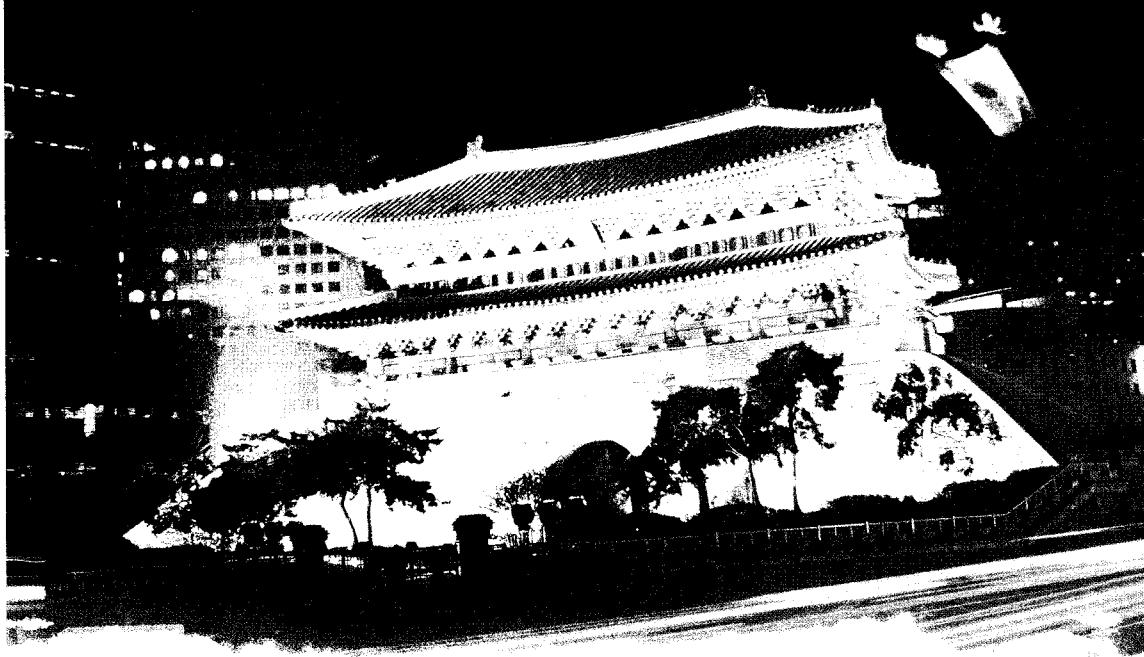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가 특정소방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1) 소방관련 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소화기는 모든 지정 문화재에 설치, 비상경보설비는 연면적 400m² 이상 시 설치, 목외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연면적 1,000m² 이상 시 설치도록 하고 있다.

(2)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의 예방) 제2항에 “지정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는 화재 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대단한 수막설비를 한 일본의 문화재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본의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 관리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로서 지진 시에는 당연히 화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교토지역을 포함한 일본 곳곳에서는 산불을 놓아 마쓰리(축제)를 하는 곳도 많이 있다. 이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막설비 설치는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재해에 의한 화재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거의 없으며 지난 2005년 강원도 낙산사 화재 시와 같이 산불에 의해서 문화재가 소실되는 위험만 있으므로 수막설비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숭례문 화재 시 일본의 지인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도 숭례문과 같이 옥내에서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다면 그냥 전소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물론 겸손하게 표현한 말로 한 걸음 양보해서 듣더라도 일본의 수막설비는 인접한 다른 문화재로의 연소(延燒)는 저지할 수 있겠지만, 외부의 화염으로부터의 건물 보호이지 내부에서의 방화 등에 의한 보호책은 되지 못한다.

4. 맷음말

얼마 전 TV보도에서 2003년에 소실된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화재 이후 복구 및 화재에 대비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는 것을 시청한 적이 있었다. 산 입구에서 사찰까지 길을 닦아놓아야 소방차가 진입할 텐데 길을 내는 것이 문제다. 문화재 관리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길을 놓아야 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는 공원 훼손 때문에 길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는 요원하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목조건축물 화재 시 최성기는 화재발생 후 8분 내외이다. 숭례문 화재 시 최초로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4분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방화라는 특성상 1~2분 안에 최성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진화할 수 없었다. 구룡사까지 길이 닦여 있었다 해도 시내의 소방차가 산 위의 사찰까지 그 많은 물(消防水)을 적재하고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산중에 사찰 등의 문화재가 많은 현실에서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한 문화재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수막설비를 많이 하면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

많은 관리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산에 위치한 문화재에 자동소화설비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겨울철에 소화수가 얼어붙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되어도 소화수가 건축물인 문화재는 보호하겠지만 그 안의 방화 등 그림문화재 같은 경우 변질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생각해볼 사항이 너무나 많다.

승례문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문화재를 개방하여 접근을 쉽게 했기 때문에 방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출입하면 오히려 방화도 불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이 쉽게 발견해서 끄기도 쉽다. 따라서 문화재가 개방되었다고 해서 승례문 화재사고와 같은 방화가 많아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접근은 쉽더라도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면 방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개방’이 문제가 아니라 개방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방화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목조문화재만 위험한가? 석조문화재도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지반조건의 변화와 태풍, 화재 등으로 망가질 수 있다. 석조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누각 등도 목조로 지어진 것들로 이들의 화재로 인한 석조문화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만큼 목조누각문화재의 화재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대안은 참 많다. 그러나 거저 지켜지지는 않는다. ‘돈’이라고 하는 경비(經費)가 지출되어야만 한다. 돈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문화재를 지키는 예산은 충분한가? 올해 문화재 방재예산을 보면 약 220조에 달하는 정부예산 중 문화재청 예산은 4,287억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0.19%에 지나지 않으며, 문화재 방재관련 예산은 91억 원으로서 문화재청 예산의 2.1%에 지나지 않는다. 소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경비원만 제대로 세워도 방지할 수 있었던 승례문 방화사건과 같은 것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예산의 부족으로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만들어 주는가? 나와 너,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예산이 없거나, 화재진압장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승례문을 지키지 못했다고 변명해주고자, 예산, 장비 타령을 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지적해본 것이다. 일본 사례, 치악산 구룡사 사례, 승례문 사례 등 모든 사고를 볼 때 남(일본)이 한다고 해서 흉내만 내거나 즉흥적인 대안만을 졸속하게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계당국과 국민 모두의 애정과 관심만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한 풀이라도 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금·기금을 내어놓음으로써 문화재가 지켜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같이 문화재보호를 위해 발심(發心)하자는 것을 감히 권하면서 글을 마친다. ⑩

